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21조의 요약

- 재화·용역공급시 계산서·영수증 작성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한 것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발급받은 것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외국법인은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재화수입시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계산서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예외를 인정).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작성·발급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는 본 법상의 계산서관련 작성·발급·합계표 제출의 제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 면세 1차생산물(농·축·수·임산물 등)의 위탁판매·대리인판매에 있어서, 위탁자나 본인이 자기명으로 계산서 등 작성발급의무가 원칙이지만, 위탁자·본인이 작성발급안한 경우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공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발급하고 합계표 제출함.
- 계산서 작성발급·합계표제출 등 제반내용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시행령 제211조·제121조 규정 준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절차 적용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적용됨.
-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계산서 발급하고, 토지·건물 등 부동산매각에 대해서는 계산서 작성의무 없음.
- 매출, 공급의 계산서 미발급, 불성실 작성,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성실 기재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1%의 가산세 부과됨.

●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Ⅰ. 본 조의 개요

① 본 조의 개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은 재화·용역공급시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는 자는 모두 이들의 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한[각 분기별 종료일로부터 25일(내국법인) 및 50일(외국법인)]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농·축·수·임산물의 위탁판매나 대리인 판매에서는 본인의 계산서 등이 아니고, 수탁자·대리인이 재화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토지·건물 부동산매각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제출의무가 없다.

본 법은 계산서의 제출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발급하는 것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산서 등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공급가액×1%이다.

② 계산서 작성발급·합계표 제출의무규정의 이유

대부분의 거래는 일반이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는 업무인 재화·용역 등을 제공하며, 다른 일반은 이러한 재화·용역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에 따라 거래대금을 주고 받는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주고 받는 거래 증빙서류로서 계산서나 영수증 등이 있는바, 대가가 소득으로 직접 귀속되는 경우는 지급조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되지만 소득이 아닌 경우는 계산서 등이 수수된다. 이는 거래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는 매출액으로, 구입하는 자는 매입액으로 기록하는바, 이의 서류로서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2부 작성하여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상대방에게 주어 증빙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자인 경우에는 본 법상의 규정이 없어도 과세자료가 파악되는데 본 조 규정으로서 사업자등록자 이외의 일반법인도 납세의 무가 있는 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내용을 알 수 있는 계산서를 발급 및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가 파악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계산서 등을 4부 작성하여 2부가 세무서에 제출되도록 하였으나, 2부만 작성하여 이의 합계표제출로 상호검증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II. 계산서 작성·발급방법

1. 계산서 발급 및 합계표 제출의무자 (법 제121조제1항)

① 재화·용역공급 법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법인은 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바, 재화·용역을 사업상 공급한다면 영리목적 유무나 납세의 무 여부에 관계없다.

일반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은 대부분 영리행위이고 납세의무가 있는 거래이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요소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고 공급이라는 사실만을 계산서 작성발급의 원인으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본 조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도의 취지상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의에 따라도 별 문제는 없다.

② 재화·용역 공급의 종류

결국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계산서가 작성·발급되어야 하는데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작성·발급되어야 하며, 면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부가가치세가 없는 영수증)이 작성·발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단순한 장소이동, 보관이동, 담보용 이동, 반환·수리·하자 등으로 인한 이동 등은 계산서 등이 작성될 필요가 없다.

이밖에 동일법인내의 내부대체도 거래명세서 등만 작성한다.

③ 용역대가 대납후 계산서발급받은 자

타인을 대신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도 공급상대방은 공급받는자 본인이나 대리인 중 어느 하나에게 계산서 등을 발급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국외의 선박회사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는 국내대리인에게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면세 1차생산물은 수탁자·대리인이 발급

(법 제121조제2항)

① 농·축·수·임산물 위탁판매 등의 수탁자·대리인이 작성·발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미가공식품(식용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과 한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원시가공상태)을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세재화의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거래에서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재화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본 항이 규정하고 있다(99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됨).

왜냐하면 이러한 1차산물의 판매·공급자 본인은 대부분 아주 영세한 경우

도 땅을 뿐 아니라 납세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 구입자가 계산서 등 증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차산물의 공급자 본인 대신에 수탁자·대리인에게 계산서 등 작성·발급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재화판매수입이 수탁자·대리인의 매출액으로 계상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은 수수료·용역대가만을 매출액으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편의상 으로서만 수탁자·대리인이 계산서를 작성·발급한다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이들 거래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도 위탁판매와 대리인판매에서 수탁자·대리인이 재화인도시 수탁자·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규정이다.

② 위탁자·본인명의 계산서 등 발급시는 수탁자는 작성안함

원칙적으로 재화·용역공급자 본인이 계산서 등을 작성·발급하므로 위탁자나 본인이 자기명의 계산서 등을 작성·발급하였다면 수탁자나 대리인은 계산서 등을 작성·발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농·축·수·임산물의 공급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자·본인명의로 계산서 작성·발급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만 수탁자·대리인이 작성·발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②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3. 수입제와는 세관장이 발급 (법 제21조제3항)

① 세관장이 계산서발급, 수입자는 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데 세관장이 재화수입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수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수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물론 부가세과세거래는 부가 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한다.

4. 계산서의 유형 및 작성방법 (법 제121조제7항)

재화와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산서는 2매가 작성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1매씩 발급되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받거나 준 것의 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제출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산서

① 계산서 작성발급방법의 소득세법 준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작성·발급하는 계산서는 사업의 편의 및 특성에 따라 편리한 양식이나 명칭 등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적·효과적 처리를 위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계산서의 작성·발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2010. 2. 18 개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98. 12. 31 개정)
-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99. 12. 31 개정)
- ⑥ 사업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로 본다. (2001. 12. 31 후단신설)
- ⑦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1.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7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⑨ 제7항 및 제8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1. 12. 31 신설)

② 수정계산서 작성방법

만약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도 작성연월일은 공급하는 때인 계산서 작성연월일을 말한다.

2) 영수증·청구서 등

① 영수증의 개념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대신 간이세금계산서나 간이계산서를 발급하였다. 95년부터는 간이계산서라는 개념을 없애고 영수증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었는데, 금전등록기 영수증부터 각 사업체가 발행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영수증이 가능하다.

② 영수증의 범위

영수증은 작성·발급가 용이하도록 서식이나 작성방법을 간소화한 것인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영수증 작성·발급대상자가 각 사업의 관행에 따라 작성·발급하는 영수증이나 계산서로서 사업자등록번호·성명·상호·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 등이 기재된 것을 영수증으로 본다.

5. 세금계산서·영수증의 계산서간주 (법 제121조제6항)

① 세금계산서의 계산서 간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도 계산서라는 포괄적 개념에 부가가치세라는 뜻의 “세금”자가 붙은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발급 등의 법적 요건이 본 법보다 훨씬 엄격하다. 따라서 본 법은 이를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도 계산서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영수증 작성·발급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본 법상의 계산서 작성·발급·제출도 그대로 본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②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비교

계산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규정이 보다 엄격하다. 그러나 양자간의 기재요건이나 기재사항은 거의 차이가 없고 단지 부가가치세라는 뜻의 세금자가 추가로 붙어 있고 기재하는 란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이의 차이점 비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계 산 서	세 금 계 산 서
근 거 규 정	법인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없 음	거래금액의 10%
사 업 자	면세사업자·일반개인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작 성 부 수	본인분 1, 상대방 1	본인분 1, 상대방 1
제 출 방 법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미발급 제제	미발급·미제출 가산세 (공급가액×1%)	미발급·미작성 가산세 (공급가액의 2%)

③ 조출료와 체선료의 계산서발급

회주가 받는 조출료는 부가가치세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만 작성·발급하면 되지만 반대로 늦게 출하하여 선주가 받는 체선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이는 조출료는 장려금적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체선료는 선적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6.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면제 (법 제12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한다.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소매업자 및 외국인 등 현실적으로 계산서 등을 작성·발급하기 어려운 거래 또는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 및 건축물 공급 등에 대하여는 계산서나 영수증의 발급을 면제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❷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2010. 2. 18 개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98. 12. 31 개정)

III.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등 제출방법

(법 제121조제5항·제6항·제7항)

① 계산서·세금계산서의 합계표 제출

종전에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2장 중 각 1장씩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이러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일목요연히 요약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납세행정을 간소화하였다. 따라서 면세사업거래나 일반사업거래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다. 관련 시행령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④ 법 제16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98. 12. 31 신설)

② 계산서 제출기한 (법 제121조제2항)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는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종료일인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은 50일)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등 합계표를 1년 단위(1. 1~12. 31)로 합하여 매년 1월 31일(외국법인은 2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 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③ 매년 1월 31일(외국법인은 매년 2월 19일)에 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일반적으로 계산서 등 제출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 : 매 3개월마다 분기 종료후 25일(4/25, 7/25, 10/25, 1/25)에 제출함(부가세신고서에 계산서합계표 등도 함께 포함해서 제출가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계산서합계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계산서합계표 등을 모두 매년 12월 31일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함(면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도 1년분을 모아 매년 1월 31일(외국법인은 매년 2월 19일)까지 합계표 제출할 수 있음).